

I 사업비 집행기준 및 유의사항

구분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불인정 기준
비목	세목		
일반 운영비 (201)	일반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자료 등 유인물 제작(인쇄)비 현수막 등 안내(홍보물)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예 :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결과물이 미제출 됐거나, 결과물이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미미한 경우
	전문가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자문료 - 진흥원 기준 1일 1시간 80,000원 (최대 5시간까지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 내 컨설팅, 자문료 기준을 초과한 집행 건 내부인력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리스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결과물이 미제출 됐거나, 임차대상물이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미미한 경우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 30% 이내로 편성 가능 '일반운영비-임차료'와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의 합산 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편성 수의계약은 건당 2,000만원 이하까지 체결가능 (여성기업의 경우 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자산취득성 비용은 편성 불가 임차기간은 사업기간(협약일 ~ 2026.11.30.)을 초과할 수 없음 		
	행사 운영비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 일반운영비 1) 초청장,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2) 행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임차료 3) 행사에 필요한 운영 등 용역비 4) 행사개최에 필요한 일회성 시설물 설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용역이 미완료됐거나, 과업에 비해 미비된 경우
광고 선전비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기타 행사성 성격을 제외한 광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용역이 미완료됐거나, 과업에 비해 미비된 경우 	
연구 개발비 (207)	연구 용역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강연, 연구 등 전문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용역이 미완료됐거나, 과업에 비해 미비된 경우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비용은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 30% 이내로 편성 가능 '일반운영비-임차료'와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의 합산 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편성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수의계약은 건당 2,000만원 이하까지 체결가능 (여성기업의 경우 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용역기간은 사업기간(협약일 ~ 2026.11.30.)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불인정 기준												
비목	세목														
여비 (202)	국내 여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출장에 필요한 경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료, 선박료 등 교통비(실비) 2) 숙박비(실비) 3) 출장자의 일비, 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 교통비 등 결재 시 발생한 대행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사이트(인터파크, 하나투어 등) 통한 수수료 숙박, 교통비 등 결재 취소, 변경 시 발생한 수수료 참여인력표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의 출장경비 해당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출장비용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 선박, KTX 등 실물티켓이 발행되는 교통편은 인정되며, 택시비, 일반버스는 불인정 여비 등 규정은 사업지침을 따라야 하며, 초과지급된 금액은 불인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철도운임</th> <th>선박운임</th> <th>항공운임</th> <th>숙박비</th> <th>일비</th> <th>식비</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실비 (일반살)</td> <td>실비 (2등급)</td> <td>실비 (일반석)</td> <td>실비(1박당 상한액 :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지역 7만원)</td> <td>1일당 25,000</td> <td>1일당 25,000</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일반	실비 (일반살)	실비 (2등급)	실비 (일반석)	실비(1박당 상한액 :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지역 7만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일반	실비 (일반살)	실비 (2등급)	실비 (일반석)	실비(1박당 상한액 :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지역 7만원)	1일당 25,000	1일당 25,000									
재료비 (206)	일반 재료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증빙사진 등 구매증빙이 없는 경우 												

II 집행내역별 불인정 기준

구분	공통사항												
불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참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건비, 4대보험 기업부담금 협약체결일 이전 또는 협약된 지원종료일 이후 집행한 금액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약정된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대표자와 인척관계(4촌 이내)인 사업장과 거래한 경우 용역비, 임차비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 사업자등록 보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순수 개인(무등록)에 한함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부동산임차료, 공과금 납부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지원금을 지출한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th> </tr> </thead> <tbody> <tr> <td>- 유흥업종 :</td> <td>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td> </tr> <tr> <td>- 위생업종 :</td> <td>아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td> </tr> <tr> <td>- 레저업종 :</td> <td>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td> </tr> <tr> <td>- 사행업종 :</td> <td>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td> </tr> <tr> <td>- 기타업종 :</td> <td>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td> </tr> </tbody> </table>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아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아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